

04 CHECK POINT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본부) 발췌

05 CHECK POINT

자주하는 질문

선박의 경우 지역 간 또는 국가 간 이동이 잦는데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Q & A

원칙적으로 선박이 등록된 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조정 가능)

(예시1)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인 경우 선박이 등록된 관할지방 해양청이 위치한 소재지 내의 보건소

(예시2)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의 경우 어선이 등록된 시·군·구 보건소

우리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싶은데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 & A

보건복지부에서는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를 통해 “설치규모, 필요성, 구성인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관할 시·도 보건관련 부서로 지원가능여부를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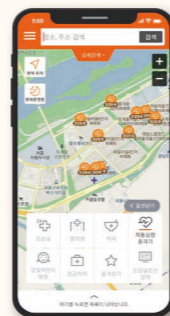
의무설치대상기관이 아니더라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가 가능한가요?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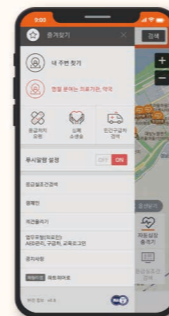
법정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가능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처를 위해 설치 신고는 꼭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비 설치 신고 시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설치위치 정보가 대국민 제공되므로, 변경사유(양도·폐기·이전) 발생 시 변경신고를 통해 장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함.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



자동심장충격기 및 월 점검 현황 외부 표출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등 안내



생활 속의 지킴이 AED

자동심장충격기

생명을 살리는 기적,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란?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심정지(심실세동 등)가 발생한 환자에게 사용하여,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기계로

1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2 환자에게 심장충격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3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를 뜻합니다.

※ 예전에는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였으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 심장충격기'로 변경(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누가 사용하나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 시 안내 음성으로 처치단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객차, 선박 등 16개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16개 의무설치 대상기관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9.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12.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년원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5.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6.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의무설치 대상기관이 아니라 자율설치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하나요?

자동심장충격기는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1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2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 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선정 원칙'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신고 절차 및 관리 방법은?



※ 장비관리 및 사용내역은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관련법을 개정 등 특이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3 서식]의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사유(양도·폐기·이전) 발생 시에도 [별지 제15호의16서식]을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이것만은 꼭!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설치한 경우에도 설치 신고를 해 주셔야 정확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치시설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정·부) 지정하여야 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1 설치기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운영 담당 및 사용 시 보고
- 2 설치기관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및 사용 안내 등 적절한 응급처치 지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나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설치나 설치 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50	75	100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	40	60